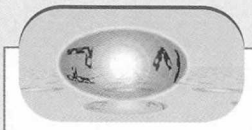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명령

농림부 고시 제 1999- 3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및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7월 1 일
농 림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및 닭의 소유자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콜레라의 경우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2. 뉴캣슬병의 경우 :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닭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1차는 부화장에서 분무접종 방법으로, 2차는 닭 사육시설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유자등의 요구가 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하거나 해당 지역의 양돈·양계 등 생산자단체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업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실시기한)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기한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돼지콜레라 또는 뉴캣슬병의 예방주사의 금지를 명령하기 이전까지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실시대장 등) ①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돼지콜레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뉴캣슬병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한 때에는 가축운반업자(돼지 수집상, 식육판매업자, 식육가공업자, 도축업영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수송상자에 예방접종 내역과 2차 예방접종 예정일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소유자등은 교부일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

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확인·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으로 하여금 관내 돼지 사육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닭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찾아낸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돼지콜레라의 혈청감사는 ELISA검사방법(효소면역항체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다음 각호의 1호에 의하며, 혈청검사는 서류검사만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농가의 항체양성률 조사 등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
2.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 훈령 제882호, '96. 12. 31)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한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교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④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필요시 돼지 사육농가·부화장 또는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이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최종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실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도지사 또는 군수는 당해 소유자등의 돼지 또는 닭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원인이 발생한 시점(예방접종 미실시 확인일자)부터 25일이 경과한 후에 혈청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유자등에게 축산경영자금 또는 국가방역용 약품 등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도축장 출하돼지 조치) ①가축운반업자 또는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류(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도축업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
2. 제5조제3항제2호의 예방접종증명서
3. 제5조제3항제3호의 예방접종증명서
4. 제5조제3항제4호의 예방접종증명서

②검사원은 제1항의 증명서가 없는 돼지 또는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도축을 제한하고 [별표2]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의 출하농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하농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종접종일(2차 접종일을 말한다)로부터 150일(종돈·후보돈·흑돼지·멧돼지는 1년, 초유전 예방접종 돼지는 210일)이내로 한다.

제8조(적용의 예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98. 9. 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이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예방접종실시대장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소유자등이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실시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방접종실시대장 등은 이고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으로 본다.

부 칙('99. 3. 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적용특례)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고시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예방접종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31일까지는 이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양돈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는 과태료 처분당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안의 사육두수(1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사육두수 또는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여 가축 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혈청검사는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돼지의 경우 검사두수의 80% 미만부터 적용한다.

다. 돼지의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혈청검사 항체양성률의 과태료 금액과 사육규모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금액은 최소 150만원 이상, 최고 300만원까지로 한다.

2. 축종별 부과기준

가. 돼지

혈 청 검 사		사 육 규 모	
항체 양성률	과태료 금액	사육두수	과태료 금액
50~80% 미만	70만원 이상	100두미만	80만원 이상
10~50% 미만	100만원 이상	100~500두 미만 (모돈10~50두미만)	100만원 이상
10% 미만	150만원 이하	500두 이상(모돈50두이상)	150만원 이하

[별표2]

도축제한 돼지의 처리절차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도축 제한사유 통보 및 혈청검사 실시

가. 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도축제한과 관련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게 도축제한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원은 도축이 제한된 돼지에 대하여 농가별 출하두수중 최소 5두 이상을 채혈한 후 가축운반업자 및 출하농가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검사원 소속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혈청검사를 의뢰받은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원에게는 24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관할 도지사에게는 48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절차

가.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원은 혈청검사 결과(음성 또는 양성)와 관계없이 도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는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출하한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 가축방역기관으로 하여금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도지사 관할구역외의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축방역기관은 해당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혈청검사 대상 : 80일령 이상 육성비육 돼지

(2) 검사두수는 육성비육 돈방별 사육두수의 10% 이상 범위내에서 농장 전체 최소 10두 이상 검사

라. 혈청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처분권자가 군수일 경우에는 군수가 처분조치와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가축방역기관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하여는 다목의 혈청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5일 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